
생활폐기물 처리 관련시설 국고보조사업 소개

2019. 1. 24

환 경 부
폐 자 원 관 리 과



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국고보조사업 소개

1 기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현황

○ 시도별 설치 현황: 생활자원회수센터

구분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개수	195	15	16	5	2	4	1	1	29	18	9	13	13	20	22	21	6

- 최초 가동년도 현황

구분	계	~ 2000년	2000~2010년	2011년 ~
개수	195	30	124	4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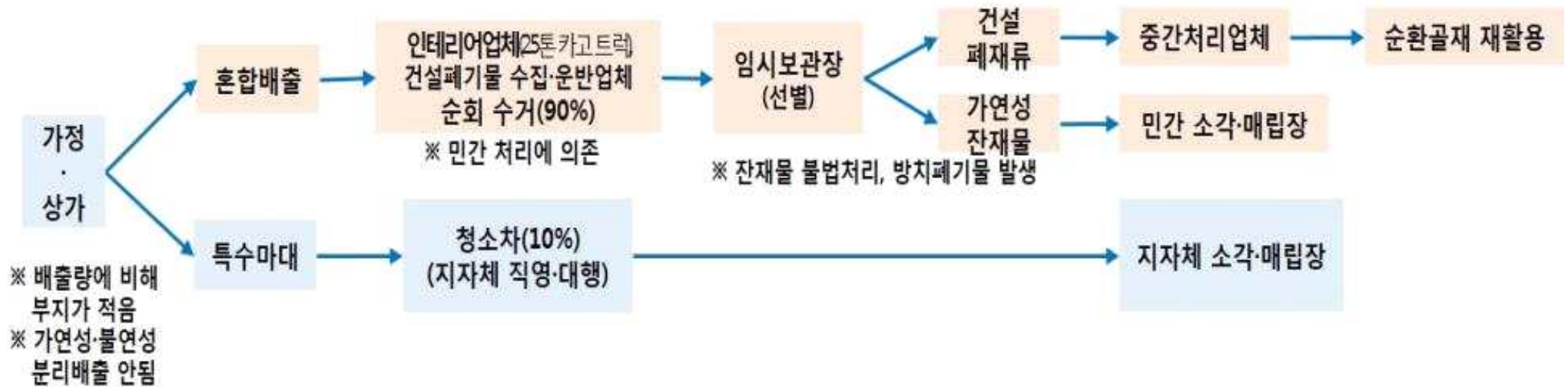
- 규모별 현황 : 직영시설이 108개소, 위탁시설이 87개소임

구분	계	시설용량		
		30톤/일 이상	10~30톤/일 미만	10톤/일 미만
개수(위탁)	195(87)	63(47)	96(32)	36(8)

②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 주요 개정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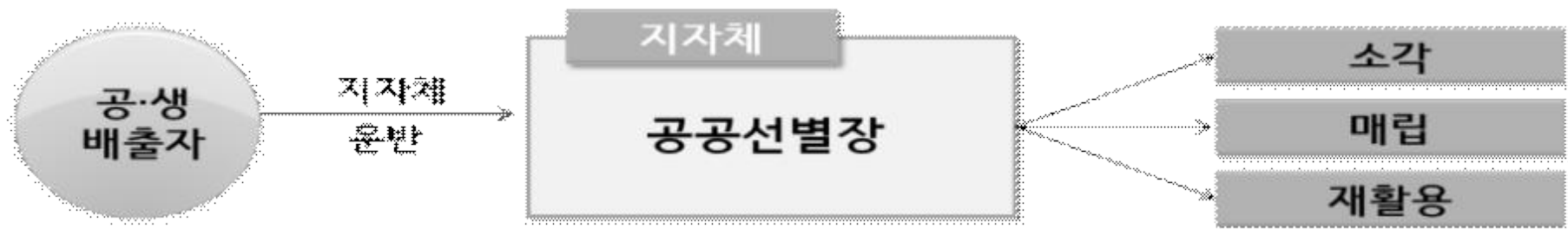
-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(5톤 미만)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처리 및 관리체계 미비로 불법 투기·방치 사례 증가

< 공사장 생활폐기물(5톤 미만) 처리흐름도 >



⇒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분리·선별 할 수 있는 집하장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·선별시설을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

-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의 분리배출·신고 의무 부여, 지자체 적정 처리체계 마련



< ①지자체 직접처리 방안(전국 일반) >

- 배출자는 가연성, 불연성 두 종류로 분리배출 → 지자체에 배출신고* → 처리비용을 지자체에 지불 → 지자체 수거 →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선별장에서 선별 → 재활용, 생활폐기물 소각·매립시설에서 처리

* (배출 신고체계) 인테리어 업체가 배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장 작성·관리

- 연안인접 지자체에서 해양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염분으로 인하여 재활용품 선별처리 곤란
 - ⇒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염분폐수 처리를 위한 세척설비 시설을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재활용을 제고

- “공동주택 폐비닐 민간업체 수거 거부” 사태에 따른 공공선별장 확충 필요성,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정 등 여건변화 반영
 - ① (대상구역 및 시설규모) 인구 40만 이상 35톤/일 이상, 인구 15만 이상 15톤/일 이상, 15만 이하는 15톤/일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인구편차, 공동주택 수거 여부 등 여건에 따라 시설용량 부족 발생
 - ⇒ 1인당 폐기물 발생량, 인구수,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량, 개발계획, 가동일수, 기존시설 용량 등 타당성 자료를 토대로 시설규모 산정

- ※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시도에서 수립하는 “자원순환시행계획” 및 시·군·구에서 수립하는 “자원순환집행계획”에 산정된 시설규모로 선정

② (설비설치에 따른 성능확인 절차 도입) 성능확인 결과 검증절차 부재로 기존시설 규모에 대한 성능 적정성 자료 확인 곤란

⇒ 시설의 안정적인 정상가동을 위하여 시운전 계획 수립 및 가동율 100%상태에서 준공검사 및 시운전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

③ (국고지원 보조율 수정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관련 지침에 따른 보조율 개정사항 반영

⇒ 예산지원 보조율 변경(총사업비: 30%→ 50% 이내) 및 기간별로 지원범위 세분화 설정

○ 2차년도 완공예정사업 : 잔여보조금의 60% 이내

○ 3차년도 완공예정사업 : 잔여보조금의 30% 이내

○ 4차년도 완공예정사업 : 잔여보조금의 20% 이내

④ (시설운영 실적자료 제출 명시)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·실태 평가시 시설 운영 자료를 미제출하는 기관이 있어, 평가시 누락

⇒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자료를 조사·평가기관에 제출토록 명시

③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국고 지원 기준

- (사업내용)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, 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원
 - * 생활자원회수센터,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 재활용시설
- (지원사항) 시설설치비 지원(국비 30%, 광역화시 30~50%)
 - * 국고보조사업 교부 및 집행관리는 유역(지방) 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담당
- (지원대상)
 - 인접 자치구 또는 광역시 전역을 처리하기 위한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-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 선별시설(지하화 등을 통한 환경개선 포함)을 설치하거나, 매립시설, 소각시설 등과 집적화하여 설치하는 경우 우선지원
 - 기존 시설을 대체(15년 이상 사용한 시설에 한함)하여 재활용품 선별 작업여건 및 시설환경의 현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
 - 분리배출 재활용가능자원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요처를 감안한 잔재물의 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
4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국고집행 및 편성 관리

□ 2019년 국고보조사업 관리

- (실적관리) 분기별 또는 반기별(5, 10월) 추진실적 제출 및 집행현황 점검
- (사업결과보고서 제출) 사업완료시 3개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

□ 2020년 국고보조사업 편성

- (실집행률 반영) '18년 또는 '18년 실집행률 80% 미만 지자체에 대해서는 '18년 예산 편성시 패널티 부여
- (지자체 정책추진의지 반영) 생활자원 분야 정책 추진의지 등이 우수한 지자체는 '18년 예산편성시 우선 국고지원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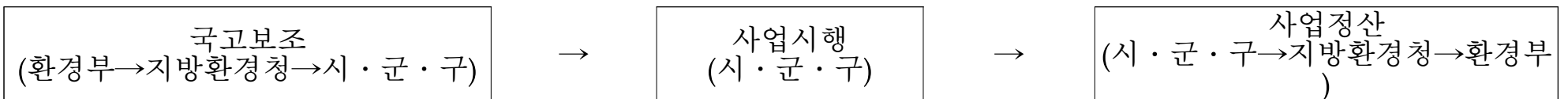
□ 배경 및 목적

- 지자체의 재활용 선별장 신·증설 및 노후시설(수선별)을 현대화된 시설(자동 선별시설)로 교체함으로써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활용을 제고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: '00년~계속
- 우선순위 : 광역시설, 신규시설, 시설노후 등 우선순위 검토
- 사업규모: '18년 12,430백만원(22개소, 신규 16, 계속 6)

□ 사업추진 절차



□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용 표준단가

구 분	사업비			비 고
	자동선별	기계선별	수동선별	
10톤/일 이하	4.13	4.13	2.94	· 시설유형 및 처리용량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 선정 · 국고지원 비율 : 30~50%
10톤/일초과~20톤/일이하	3.20	2.90	-	
20톤/일초과~30톤/일이하	2.48	2.28	-	
30톤/일초과~40톤/일이하	2.38	1.86	-	
40톤/일초과~50톤/일이하	2.28	1.65	-	
50톤/일초과~60톤/일이하	2.22	1.45	-	
60톤/일초과~70톤/일이하	2.17	1.35	-	
70톤/일초과~80톤/일이하	2.13	1.24	-	
80톤/일초과~90톤/일이하	2.11	1.18	-	
90톤/일초과	2.09	1.13	-	

□ 예산지원 현황

(단위 :백만원)

연 도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11,161	10,810	9,355	8,294	8,179	6,697	10,145	7,071	12,403

- (사업내용) 폐기물 소각·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처분부담금 부과와 병행,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·선별하여 물질재활용하는 전처리시설 지원
 - 사업비: 45억원/개소(국비 50% 지원)
 - 시설용량: 약 80톤/일
 - 장비: 파쇄기, 타격식·디스크·풍력식 선별기, 분쇄기, 압축기, 집진기, 방음장치, 컨베이어 시설 등
 - 부지: 약 480평(80mL×20mW×10mH)
 - ※ 재정 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
- (지원대상)
 - 매립·소각량이 많아 처분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
 -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낮아 매립·소각 감축 여력이 낮은 지자체
 - 시설설치 부지 확보 지자체
- ('20년 예산 신청)
 - 지자체 신청(2월), 재정 당국과 예산협의(3월 ~)

- (사업내용) 농어촌,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등을 분리·배출·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수거 시설(재활용 동네마당) 설치
 - 상시 배출가능 시설 설치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,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
- (지원대상)
 - 재활용률 향상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(선정지표: 사업부지 확보된 지자체(주민동의서 등 증빙서류첨부), 2020년 예산 조기집행 계획서, 주민부담률,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률 높은 순)
 - 농어촌지역, 단독주택 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 우선 지원
 -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·관리 인건비 확보 지자체 우선 고려
 - 지방비 부담분(50%) 확보 자치단체 등
- ('20년 예산 신청)
 - 지자체 신청(2월), 재정 당국과 예산협의(3월 ~)